

##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7. 08.  
개정 2017. 10.  
개정 2018. 12.  
개정 2019. 03.  
개정 2019. 11.  
개정 2020. 03.  
개정 2020. 06.  
개정 2020. 08.  
개정 2021.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1조2항에서 정한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본교에서 운영하는 원격 수업에 대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수업을 말한다.(개정 2021.03.17.)
2. “원격병행수업”이란 1호에 의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수업과 오프라인 출석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12.18.)(개정 2021.03.17.)

**제2조의2(교과목 분류)** ①원격수업의 교과목 분류는 원격으로 진행되는 수업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2021.03.17.)

1. 원격수업 과목: 수업의 대부분을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수업.
  2. 원격병행수업 과목: 수업의 일부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수업.
- ②교과목 분류 및 수업 방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03.17.)

**제3조(학점인정)** ①원격수업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 미만으로 하며, 이수학점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1.03.17.)

②(삭제 2021.03.17.)

③(개정 2019.03.14.)(삭제 2019.11.05.)

④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이수하고 이수증명서(수료증 등)를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본교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신설 2020.03.17)

1. 인정학점의 범위: 이수 시간에 상관없이 1개 과정당 1학점으로 함
2. 재학 중 취득 가능학점: 1 또는 2학기에 학기당 1학점으로 제한하며, 재학중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함
3. 인정과목명의 표기: K-MOOC에서 이수한 과정명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정 과목명에 ‘K-MOOC’을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음
4. 인정학점의 이수구분: 일반선택으로 함
5. 신청 제한: 초과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음
6. K-MOOC 인정 학점은 학칙 제33조2항에서 정한 학기 중 수강학점에 포함함

⑤제4항에서 정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생은 이수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수완료일 기준 1년을 초과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03.17.)

⑥ 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대학과 학점교류 및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의한 원격수업 학점이수에 관

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0.6.16)(개정 2021.03.17.)

1. (삭제 2021.03.17.)
2. (삭제 2021.03.17.)
3. (삭제 2021.03.17.)
4. (삭제 2021.03.17.)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의 일환으로 2020학년도 및 2021학년도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제6항 각 호에서 정한 제한 학점 범위 내에서 제외 한다.(신설 2020.06.16.)(개정 2020.08.25.)(개정 2021.03.17.)

**제3조의2(온라인 학위 과정 운영)** ①「교육부 훈령 제367호(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근거하여 해외대학 및 국내 대학 간 공동(복수학위)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03.17.)

②기타 공동(복수학위) 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21.03.17.)

**제4조(학점당 이수시간)** 원격수업의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5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①원격수업의 수업일수는 학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매 1·2학기는 15주 이상으로, 여름·겨울학기는 3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과목의 특성에 따라 블록형태(주 또는 일 단위) 등의 집중이수제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03.17.)

②1차시의 수업 콘텐츠 진행시간은 최소 25분(1학점 기준)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19.03.14.)

③1차시 총 학습시간은 50분 이상이어야 하며, 총 학습시간에는 제2항의 동영상콘텐츠 및 토론, 과제, 질의응답 등의 학습활동을 포함 한다. (개정 2018.12.18.)(개정 2019.03.14.)

**제5조의2(원격수업의 개설 및 합·폐강)** ①학기별 개설 가능한 원격수업 교과목 수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를 정한다.(신설 2018.12.18.)(개정 2021.03.17.)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의 일환으로 2020학년도 및 2021학년도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에는 개설 가능한 원격수업 교과목 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신설 2020.06.16.)(개정 2020.08.25.)(개정 2021.03.17.)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원격수업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1.03.17.)

1. 실험·실습 교과목으로 교내 또는 교외 실습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원격수업 콘텐츠 검수결과가 부적격으로 결정된 경우
3. 기타 원격수업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육과정 특성상 원격수업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염병 등의 재난에 의하여 대면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 과목 수 및 제한 범위를 별도로 할 수 있다.(신설 2021.03.17.)

⑤원격수업의 수강규모는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합반 및 폐강의 기준은 「수업 운영규정」 및 「수업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21.03.17.)

**제6조(시수인정 및 강사료)** 원격수업으로 진행되는 시간에 대한 교원의 시수인정 및 강사료 산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출석관리)** ①원격수업의 출석인정 기준(접속시간 등을 포함한다) 및 결석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출결처리는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등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③기타 원격수업의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03.17.)

**제8조(성적평가 및 강의평가 관리)** ①학생의 성적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 등)는 출석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12.18.)(개정 2020.6.16)

1. 「교육부 지정대학 이러닝 지원 센터」로 지정된 대학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타 대학 학생이 수강하는 경우
2.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 복무 중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3.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시 외국대학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4. 국가 전염병 등의 국가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출석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신설 2021.03.17.)
5.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신설 2021.03.17.)

②(삭제 2018.12.18.)

③(삭제 2018.12.18.)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의 일환으로 2020학년도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에 한하여 제1항 각호 이외의 과목의 경우에도 온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06.16.) (개정 2020.08.25.)

⑤원격수업의 강의평가(수업평가)는 1학기 및 2학기의 경우 학기별 각 2회로 하며, 강의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업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1.03.17.)

**제9조(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 ①원격수업 콘텐츠의 품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원격수업의 콘텐츠는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콘텐츠 수정여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 및 교수 등에게 유지·수정·보완·재제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2항에서 정한 조치 권고를 받은 부서 및 교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콘텐츠를 수정·보완·재제작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기타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03.17.)

제9조의2(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원격교육의 질적 향상 및 내실화를 위하여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업무는 ‘교수학습개발센터’ 또는 ‘온라인수업인증 및 질관리센터’ 등에서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21.03.17.)

**제10조(운영 방법)** ①원격수업에 의한 교과목 운영 및 학점취득 등은 본교 및 본교와 학점교류협약이 이루어진 국내·외 대학의 원격강의시스템으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기타 국내외 공공기관 및 사설기관, 산업체, 학원 등에서 진행되는 원격형식의 수업 등을 통해 이수한 과정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2.18.)

②원격수업 과목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부) 등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강의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1.03.17.)

**제11조(콘텐츠 개발 및 지원)** ①학교는 원격수업을 위한 원활한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을 위해 시설, 기자재, 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1조①항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절차·방법·기간·과목명·콘텐츠의 종류 등을 명시한 콘텐츠 개발 신청서를 교수학습개발센터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콘텐츠는 문서(PPT, PDF, 아래한글, MS Word 등) 또는 영상(동영상, 플래시 등) 또는 이미지(그림, 사진 등) 등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원격수업의 원활한 진행 및 관리(출석관리, 평가 관리, 품질관리 등)를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해 개발된 콘텐츠를 본교 원격수업 이외 K-OCW 및 K-MOOC 등에 등재하고자 할 경우, 교수학습개발센터를 경유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콘텐츠는 제9조에서 정한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⑥콘텐츠를 개발·제작하고자 하는 교원은 국내 저작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기타 외부콘텐츠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03.17.)

**제12조(원격수업의 관리 및 운영)** ①원격수업과 관련한 교과목의 개설 및 성적평가, 학사운영 등의 관리는 교무처에서 주관하며, 기타 사항은 본교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원격수업을 위한 웹사이트의 관리, 콘텐츠 관리, LMS 온라인 관리, 교수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관한다.

**제12조의2(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①원격수업의 교수자 및 학생 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21.03.17.)

②기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1.03.17.)

**제1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8.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2017학년도 1학기 개설 과목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1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0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3조7항, 제5조1항, 제5조의2 2항, 제7조3항, 제8조1항 4호 및 5호, 제9조5항」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2학기 개설과목부터 적용한다.